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5. . . (제 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0657호, 2025. 1. 7. 공포, 2025. 7. 8. 시행)됨에 따라 추서 특별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에 위임된 역학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4. 09. ~ 2025. 05. 19.)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단서에 따라 공무원 이 순직 또는 전사하여 특별승진된 경우 그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역학조사의 의뢰) 공단은 제84조제4의2호의 역학조사의 실시 에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 등이나 「산업 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 단 또는 그 밖에 각종 질병의 발생 및 진단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액 산정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급여 사유
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급여액 산정의 기준일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17조(급여액 산정의 기준일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순직 또는 전사하여 특별승진된 경우 그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u><신설></u>	제78조의2(역학조사의 의뢰) 공단은 제84조제4의2호의 역학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 등이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그 밖에 각종 질병의 발생 및 진단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